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8098호, 2006. 12.28.)됨에 따라 현행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에 개정 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함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개정 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제8조 및 제23조(발췌 별첨)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하고,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7조중 “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명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명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공직자윤리법」----------.	낫표 표기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생 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생 략) 3. (생 략) 4. 법 제23조의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① (현행과 같음) ②---------- ----------. 1. 법 제8조 제7항----------제8조 제12항----------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4조---------- ---------- ③ (현행과 같음)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반영
제7조(수당등)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등) ----------「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낫표 표기